

비정정상의 정상화 이행과제 추진실적(6. 30 현재)

NO	세부추진 내용	완료 일자	기준 규정	개정 규정	부진사유
1	퇴직자 재취업 제한규정 위반업체 적발시 입찰제한 규정 마련(3년) * 6월말 시행예정	6.30		<p>입찰구매지침서 제2조 입찰계약</p> <p>2.4 참가제한</p> <p>① 철도시설공단 및 철도운영기관(철도공사 등) 퇴직자의 유관업체 재취업 제한 규정을 위반한 고용업체 적발 시 입찰 제한</p>	
2	퇴직자 설계용역 참여시 전관예우 처단을 위해 설계감리 선정 평가 기준에 감점항목 신설 * 6월말 시행예정	6.30		해당사항 없음	
3	구매기술규격서 사전 공개제도 시행 * 6월말 시행예정	6.30		<p>입찰구매지침서 제2조 입찰계약</p> <p>2.5 계약자선정</p> <p>① 철도 안전물품 :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철도 안전물품 계약자 선정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전문성·기술성·인성·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매기술규격서를 사전에 공개하여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고, 안전과 품질 위주의 평가를 한 후 협상 절차를 통하여 당사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. 단, 10억 이상의 철도 안전물품 구매 시, 평가위원에 외부 인사를 위촉하여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선정절차에 내실을 기한다.</p>	
4	구매발주사업 평가위원을 외부위원으로 위촉 * 6월말 시행예정	6.30		<p>입찰구매지침서 제2조 입찰계약</p> <p>2.5 계약자선정</p> <p>① 철도 안전물품 :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철도 안전물품 계약자 선정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전문성·기술성·인성·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매기술규격서를 사전에 공개하여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고, 안전과 품질 위주의 평가를 한 후 협상 절차를 통하여 당사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. 단, 10억 이상의 철도 안전물품 구매 시, 평가위원에 외부 인사를 위촉하여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선정절차에 내실을 기한다.</p>	
5	입찰참가자격 사전등록제 시행 (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부품)	-		<p>입찰구매지침서 제3조 입찰 구매 절차</p> <p>3.3 구매부서는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철도 안전물품은 사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규격 및 입찰참가자격을 공개하고, 생산 및 공급능력, 생산실적 및 거래실적, 품질관리상태 등을 평가하여 적정한 업체만 지명하여 경쟁을 시킨다.</p>	

NO	세부추진 내용	완료 일자	기준 규정	개정 규정	부진사유
6	구매제도 개선위원회 구성·운영 * 시행중	5.30		구매관리규정 제5장 제25조 구매제도 개선위원회 철도주요부품 및 서비스의 중요구매, 유지관리 품질 증대 등 공정성, 투명성, 안전성, 경제성, 품질 등을 고려해 당사 구매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안전, 기술, 법무, 재무 등의 담당자로 구성된 위원회를 주취하여 개선을 시행 및 관리한다.	
7	해외부품의 원재적사 적격대 확대 시행 * 시행중	5.30		구매관리규정 제3장 제13조 구매부서의 역할 ⑧ 해외제각 부품의 조달 시, 제작사 또는 그의 국내 대표 대리점을 통하여 해당 부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하고, 필요에 따라서, 제각중간검수를 실시토록 한다.	
8	해외부품 제작사에 대한 현지 중 간점검 시행(기관별 선정) * 시행중	5.30		구매관리규정 제3장 제13조 구매부서의 역할 ⑧ 해외제각 부품의 조달 시, 제작사 또는 해당 국내 대표 대리점을 통하여 해당 부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하고, 필요에 따라서, 제각중간검수를 실시토록 한다.	
9	위·변조 시험성적서 제출업체는 영구 입찰제한제도 시행 * 6월말 시행예정	6.30		입찰구매지침서 제2조 입찰계약 2.4 참가제한 ② 위·변조 시험성적서 제출 등 비리업체는 영구 입찰 제한하고 거래금지업체로 관리	
10	시험성적서 재검증 제도 마련 및 년1회 정기검사 시행 규정 마련 * 시행중	5.30		구매관리규정 제4장 제17조 구매품의 2. 품질 : 철도유지관리주요부품의 경우, 부품의 품질확보를 위해 구매요청부서에서 요청한 품질 기준 및 기타 승인, 인증을 확보한 부품을 조달하며, 안전과 직결한 주요 부품 시, 요청에 따라 시험성적서 재검증 및 검교정 등의 정기검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한다.	
11	시료채취 시 검사자가 직접 입회 하여 공인시험 기관에 의뢰 규정 마련 * 시행중	5.30		검수절차서 7. 검수절차 / 7.1 일반 구매주문서에 의한 발주검사 7.1.2 검수담당자는 구매주문서에 기재된 납품일자에 납품 및 서비스가 완료되면 구매담당자가 전달한 검수 관계서류를 지참하여 본 절차서 [5 검수시행]에 의거하여 검수를 실시한다. 검수담당자와 수령인은 검수 절차에 동시 입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하자가 없을 경우 거래명세서(또는 대체서류)에 양측이 서명한다. 이때 수령인은 철도유지관리 주요부품과 같이 계약서 및 구매주문서에 성적서 정구가 기재된 구매주문건을 필요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고 시험성적서를 청구 할 수 있다.	
12	시험성적기관 관련 법규 개정	-		해당사항 없음	